



차이나

CHINA 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北京渡正律师事务所
Beijing Duzheng partner law firm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공지 드립니다.

국가비밀보호법(2024)

1 배경

- 2024년 2월 27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이하 '국가비밀보호법' 으로 약칭) 제2차 개정안이 통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 중국의 국가비밀보호법은 1988년 최초 도입, 2010년에 1차 개정되었으며 비밀보호 영역에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임
 - 글로벌 형세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비밀 보호는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자 제2차 개정을 진행
 - 동 개정법은 총 6장 65조로 구성, 기존 대비 12개 조항을 추가하고, 50개 조항을 수정
 - 개정된 국가비밀보호법의 시행을 위해 2024년 5월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발표, 2024년 6월 26일 국무원 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 개정안(이하 '실시조례 개정안'으로 약칭)>이 통과됨

* 통과된 실시조례 개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본 보고서는 의견 수렴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함

2 <국가비밀보호법> 주요 내용

1) 개정법에서 확정한 비밀유지의 주요 제도(제8조)

- 기관, 단위(单位) 등은 비밀유지업무 책임제를 시행, 법에 따라 비밀유지 업무기구 또는 전문담당자를 지정하여 비밀유지 업무 담당. 또한 비밀유지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조치를 정비하며, 비밀유지 관련 교육 및 감독업무를 강화해야 함
 - * 단위(单位) : 기관·단체·사업체·기업 등을 가리킴
- 비밀유지 책임제는 당과 정부의 지도자급 간부의 책임제, 비밀유지 주요부서 담당자의 책임제, 비밀유지 정보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제 등이 있음
- 개정법은 기존 대비 ‘비밀보호 업무기구 또는 전문 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2) 국가비밀이란(제2조, 제13조)

- 국가비밀이란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기간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진 사항을 가리킴
- 국가의 안전 및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누설되면 국가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영역의 안전과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은 국가비밀로 확정해야 함
- △국가 사무의 중대한 의사결정 중 비밀사항, △국방건설과 무장활동 중 비밀사항, △외교활동 중 비밀사항 및 대외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 비밀사항, △과학기술 중 비밀사항, △국가안전 활동을 수호하고 형사범죄를 추궁 조사하는 과정의 비밀사항, △국가비밀 보호 행정관리부서에서 확정한 기타 비밀사항, △정당(政党)의 비밀사항이 전항(前款)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국가비밀에 포함
- <실시조례 개정안>은 상기 범위에 기초하여 기관, 단위에서 국가비밀 사항 리스트를 작성하여 동급 비밀행정 관리부서에 신고하고 적시에 리스트를 개정하도록 요구함

3) 국가비밀을 3등급으로 구분(제14조)

-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절대 비밀(绝密),’ ‘기밀(机密),’ ‘비밀(秘密)’ 3단계로 구분

4) 국가비밀 사항의 범위에 대한 확정부서(제15조)

- 국가비밀 및 비밀등급의 구체적인 범위(이하 ‘비밀유지범위’라고 함)는 국가비밀 보호 행정관리부서에서 독립적으로 또는 관련 중앙국가기관과 함께 규정하며, 군사방면의 비밀유지 범위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규정함
- 기존에는 국가비밀 보호 행정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혹은 외교, 공안, 국가안전 및 기타 중앙부서와 공동으로 국가비밀유지 사항의 범위에 대해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국가비밀 보호 행정관리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국가비밀 유지 사항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게 함

5) 정밀(定密) 담당자 및 국가비밀 등급에 대해 확정(제16조, 제17조)

- 기관, 단위 주요 담당자 및 지정된 인원은 정밀 담당자로 해당 소속 기관 및 단위의 국가비밀의 범위 확정, 변경 및 관련 업무를 담당
 - * 정밀(定密) : 어떠한 사안에 대해 국가비밀로 정하는 것
- 중앙 국가기관 및 성급(省級) 기관은 ‘절대비밀’, ‘기밀’, ‘비밀’을 확정할 수 있고, 시급(市級) 기관은 ‘기밀’, ‘비밀’을 확정할 수 있음

6) 비밀유지 기한(제20조)

- 비밀유지 기한은 국가안전에 따라 확정
- ‘절대비밀’의 경우 최장 30년, ‘기밀’의 경우 최장 20년, ‘비밀’의 경우 최장 10년의 비밀유지 기한을 부여, 기한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밀 해제 조건을 정해야 함

7) 국가비밀의 습득 범위(제21조)

- 국가비밀의 습득범위는 업무의 수요에 따라 최소범위로 제한되어야 함. 구체적 인원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 기관, 단위를 제한하여 해당 기관, 단위에서 구체적 인원을 배정
- 개정법은 정밀기관에서 습득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관 및 지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규로 추가

8) 국가비밀 심사와 비밀 해제 제도(제24조)

- 기관 및 단위는 매년 국가비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비밀유지 기한이 지난 비밀은 자체 해제되고 비밀유지 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비밀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해밀조치 시행. 비밀유지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다시 정밀을 시행

9) 국가비밀 매체(제26조~28조)

- 국가비밀 매체 : 문자, 데이터, 부호, 도형, 동영상, 음성 등 방식으로 국가비밀 정보를 기재한 종으로 된 서류, 광학 매체, 전자 매체 등을 가리킴
- 국가비밀 매체 제작, 수신 및 접수, 전달, 사용, 복제, 보관, 접수 및 소각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기관 및 단위는 국가비밀 매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 :
△국가비밀 매체 불법 획득, △국가비밀 매체를 매매, 전송 또는 사적으로 소각, △우편, 택배 등 비밀보호 조치가 없는 경로를 통해 국가비밀 매체를 전달, △국가비밀 매체를 운송 및 탁송하여 해외에 보내는 행위, △유관 주관 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국가비밀 매체를 휴대 및 전달하여 출국하는 행위, △기타 국가비밀 매체 비밀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
- 금지행위에서 ‘기타 국가비밀 매체 비밀보호 규정 위반 행위’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금지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함

10) 국가비밀 복제, 기록, 저장 금지(제29조)

- 국가비밀 보호 규정과 표준에 따라 유효한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터넷 및 기타 공공 정보망 또는 유선과 무선 통신으로 국가 비밀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
- 개인 간 교류 및 통신 중에 국가비밀과 관련된 내용 금지

11) 정보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비밀 유지관리(제31조)

- 기관 및 단위는 반드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비밀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비밀보호 자체 감독관리 시설을 구축하며 적시에 안전비밀 보호 위험과 폐단을 발견하고 처리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신규 추가
- 조직 및 개인의 금지 행위 : △국가비밀 보호 규정과 표준에 따른 유효한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밀 관련 정보 시스템 또는 설비를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망에 접속시킨 경우, △국가비밀 보호 규정과 표준에 따른 유효한 비밀보호 조치 없이 비밀 관련 정보 시스템 또는 설비와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망 간 정보 교환을 진행한 경우, △비(非)비밀 관련 정보 시스템 또는 설비를 사용하여 국가비밀을 저장 또는 처리한 경우, △비밀 관련 정보 시스템의 안전기술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 삭제, 변경한 경우, △안전기술 처리를 거치지 않은 비밀 관련 정보를 증정, 판매, 유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기타 정보 시스템, 비밀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

12) 비밀안전 보호제품 및 비밀유지 기술장치(제32조)

- 국가 비밀안전 보호제품 및 비밀기술 장비는 국가 비밀 규정 및 표준을 준수

13) 신문출판, 방송, 동영상 및 인터넷정보 비밀관리에 대한 요구(제33조)

- 정기간행물, 도서, 동영상 제품,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인쇄, 발행, 라디오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의 제작과 방영, 사이버 정보의 제작, 복제, 발표 등은 국가비밀 보호 규정을 준수

14) 인터넷 운영자의 비밀보호 관리책임과 의무(제34조)

- 인터넷 운영자는 사용자가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公安기관, 국가 안전기관의 국가비밀 누설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협조
- 인터넷 운영자가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망을 이용하여 발표했던 정보가 국가비밀 누설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정보 전송을 즉시 정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 또는 公安기관, 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해야 함
- 인터넷 운영자는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 또는 公安기관, 국가안전기관의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비밀 누설에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 아울러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처리를 진행
- 개정법은 기존 대비 인터넷 운영자의 비밀보호 관리의무를 강화함. 기존의 조사에 협조, 국가비밀 관련 정보 삭제 등 피동적인 요구사항에서 사용자가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비밀누설 관련 설비에 대한 기술처리를 진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도적인 관리 의무를 추가함

15) 정보공개 비밀보호 심사제도(제35조)

- 기관, 단위는 법에 근거하여 공개하려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심사를 시행하고, 국가비밀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신규로 추가

16) 데이터 비밀보호 관리(제36조)

- 국가비밀 관련 데이터 처리 활동 및 안전 감독관리는 비밀보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국가비밀 보호 행정관리 부서는 관련 주관부서와 함께 안전 비밀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 비밀보호 통제 조치를 취하여 데이터 누설 위험을 방지
- 데이터 비밀보호 관리의 전체 내용은 개정법에서 신규 추가한 부분으로 국가비밀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

17) 외국 또는 중국 내 설립한 외국기관에 국가비밀을 제공한 경우 관련 규정(제37조)

- 중국의 기관 및 단체가 외국 조직이나 기관에 국가비밀을 제공, 또는 임용한 경우, 또는 채용한 외국인이 업무상 필요로 인해 국가비밀을 알게 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
- 해당 내용은 개정법에서 새롭게 추가한 내용으로 외국인이 국가비밀을 알게 된 경우 심사평가를 거쳐야 하며 국가비밀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하고 국가비밀유지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됨

18) 회의 또는 활동 개최 관련 국가비밀 보호(제38조)

- 회의 개최 또는 기타 활동이 국가비밀과 관련될 경우, 주최 기관은 반드시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고 참가 인원에게 대해 비밀누설 금지 교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비밀유지 관련 요구사항을 제출

19) 군사 금지 지역 관리(제40조)

-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및 기타 국가비밀에 속하는 장소 및 위치는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개방을 금지

20) 국가비밀 관련 업무 종사업체(제41조~42조)

- 국가비밀 관련 업무 종사 기업, 비밀보호 관리 능력 구비, 비밀보호 규정 준수
- 국가비밀 관련 매체의 제작, 복제, 유지보수, 소각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비밀관련 정보 시스템, 무기 장비 과학연구 생산, 비밀 군사시설 건설 등 업무 종사 시 심사를 거쳐 비밀보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국가비밀 관련 재화, 서비스 조달 기관, 단위 및 국가비밀 관련 시공, 설계, 관리 업체는 비밀보호 규정 준수
- 기관, 단위가 기업과 사업 단위에 위탁하여 국가비밀 관련 업무 종사 시 비밀보호 협의 체결, 비밀보호 요구 제출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21) 비밀유지 관련 인원에 대한 관리(제43조~47조)

- 비밀유지 근무인원에 대해 비밀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
- 비밀유지 관련 인원의 출국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야 함
- 비밀유지 관련 인원이 이직하는 경우 비밀유지 교육을 지속 시행하며, 국가비밀 매체 정리, 비밀 유지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종료 후에 대한 관리 시행

- 비밀유지 관련 인원에 대해 개정법은 기존에 비해 비밀유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 비밀보호 의무를 강조

22) 감독관리(제48~56조)

- 비밀유지 행정관리부서는 비밀유지 규정제도와 비밀유지 기준을 제정, 또한 비밀유지 교육, 비밀유지 검사, 비밀유지 기술, 비밀유지 위법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등 모든 국가비밀 보호 관련 직책과 감독, 관리, 조사의 행정권을 보유
- 비밀유지 행정관리 부서는 사건 조사 중에 관련 자료를 열람, 인원 대상 질문, 상황 기록 등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신규로 추가

23) 법률책임(제56조~62조)

- <국가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내리며 위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음
 - ① 국가비밀 매체를 불법 획득, 소지한 경우
 - ② 국가비밀 매체를 매매, 전송 또는 사적으로 소각한 경우
 - ③ 우편, 택배 등 비밀 보호조치가 없는 경로를 통해 국가비밀 매체를 전달한 경우
 - ④ 국가비밀 매체를 배달, 또는 탁송하여 출국하거나, 유관 주관 부문 허가를 거치지 않고 국가 비밀매체를 휴대, 전달하여 출국한 경우
 - ⑤ 국가비밀을 불법복제, 기록, 저장한 경우
 - ⑥ 사적 교류 및 통신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관한 것
 - ⑦ 국가비밀 보호 규정과 표준을 위반하여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터넷 및 기타 공공 정보망과 접속시킨 경우
 - ⑧ 국가비밀 보호 규정과 표준에 따라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밀 관련 정보 시스템, 비밀 관련 정보설비 및 인터넷, 또는 기타 공공정보망 간 정보교환을 진행한 경우
 - ⑨ 비(非)비밀 관련 정보 시스템, 비(非)비밀 관련 정보 설비를 사용하여 국가비밀을 저장 및 처리한 경우
 - ⑩ 비밀 관련 정보 시스템의 안전기술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 삭제, 변경한 경우
 - ⑪ 안전 기술처리를 거치지 않고 비밀 관련 정보설비를 증정, 판매, 유기 또는 기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
- 위의 행위가 있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 인원이 있는 경우,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가 그 소속기관에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독촉
- 동 법규를 위반하여 비밀누설 사건이 발생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담당 주관 인원과 관련 직접책임자는 처분을 받음

- 인터넷 운영자가 동 법규 제3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전기통신 주관부서, 비밀보호 행정관리 부서에서 각자 직책에 따라 처벌. 또한 인터넷 운영자의 경우 비밀유지 법규와 국가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비밀유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투서, 발견, 처리제도를 수립하여 비밀누설 응급처리 시스템을 마련
- 비밀누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응급시스템을 가동하고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행정관리기관 또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에 보고
- 비밀보호 자격을 획득한 기업에서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한 내 시정, 경고 또는 공개질책을 시행하며 특별히 엄중할 경우 비밀보호 자격획득 권한 말소를 시행. 위법소득이 발생한 경우, 위법소득 몰수
- 동 법을 위반하여 범죄 구성 시 형사책임 추궁

3 <국가비밀보호법(2024)> 주요 시사점

1) 인터넷 정보 비밀보호 관리 강화

- 정보데이터가 발전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 맞춰 인터넷정보 비밀보호 및 관리를 강화함
- 인터넷 정보의 제작, 복사, 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국가비밀보호법 준수를 강조하고, 인터넷 운영자의 국가비밀 유출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협조를 의무화
- 인터넷 운영자의 국가비밀 유출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삭제조치 의무화, 해당 플랫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를 신규로 추가

2) 국가비밀에 대한 비밀보호 관련 기술, 설비, 기술처리 등 요소를 대량 추가

- 개정법은 중국 정부의 국가비밀 보호 과정에서의 보호기술, 설비, 국가비밀에 대한 기술처리 등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을 이용한 국가비밀 보호, 비밀보호 영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3) <국가비밀보호법>의 적용 가능성

- <국가비밀보호법>의 국가비밀 확정, 비밀보호제도, 감독관리 등을 살펴보면 국가비밀 보호의 의무는 국가비밀을 생성하거나, 확정하는 국가기관, 단위 및 수권 기업, 단체와 주요책임자에 있음
- 일반 기업,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국가비밀을 접촉하거나 수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만약, 근무하는 기업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국가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내에서는 국가비밀유지 협의서 작성 등 명시적으로 국가비밀보호의 의무를 고지받게 될 것으로 보여짐

4) 유의점

-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의 국가비밀을 전송하는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가비밀보호법>보다는 <반간첩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국가비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소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중국에서 명확하게 통제하고 있는 구역, 지역에 접근하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을 자제해야 함
- 또한 국가비밀과 관련된 파생 또는 잠재 혐의가 있는 정보는 적시에 관련된 국가의 정밀기관에 신고하여 국가기밀 여부를 확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정밀기관은 정밀권이 있는 기관으로 비밀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중앙국가기관, 성급기관 및 수권 기관은 절대비밀급, 기밀급 및 비밀급 국가비밀을 정하고 자치주(自治州)는 기밀급 및 비밀급 국가기밀을 정할 수 있음